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2p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개념,공식-설명	저장소의 구분 표 1. 하단 : 옥외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저장소의 구분 표 1. 하단 : 옥내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수정 사유	본문 오류																														
4~4p 기출유사문제 번호 : 02	해설	02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위험물운반용기예표시는주의사항으로표시된것은? ① 마그네슘 화기주의 및 물기 엄금 ② 황린 화기주의 및 공기 접촉주의 ③ 할로겐화합물 기연물접촉주의 ④ 탄화합물 물기 엄금 해설) 위험물 운반용기의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table><tr><th>품명</th><th>마그네슘</th><th>황린</th><th>할로겐화합물</th><th>탄화합물</th></tr><tr><td>류 별</td><td>제2류</td><td>제3류 자연발화성</td><td>제1류</td><td>제3류 금수성</td></tr><tr><td>주의사항</td><td>화기주의 및 물기엄금</td><td>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td><td>가연물접촉주의</td><td>물기엄금</td></tr></table>	품명	마그네슘	황린	할로겐화합물	탄화합물	류 별	제2류	제3류 자연발화성	제1류	제3류 금수성	주의사항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가연물접촉주의	물기엄금	02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위험물운반용기예표시는주의사항으로표시된것은? ① 마그네슘 화기주의 및 물기 엄금 ② 황린 화기주의 및 공기 접촉주의 ③ 할로겐화합물 기연물접촉주의 ④ 탄화합물 물기 엄금 해설) 위험물 운반용기의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table><tr><th>품명</th><th>마그네슘</th><th>황린</th><th>할로겐화합물</th><th>탄화합물</th></tr><tr><td>류 별</td><td>제2류</td><td>제3류 자연발화성</td><td>제6류</td><td>제3류 금수성</td></tr><tr><td>주의사항</td><td>화기주의 및 물기엄금</td><td>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td><td>가연물접촉주의</td><td>물기엄금</td></tr></table>	품명	마그네슘	황린	할로겐화합물	탄화합물	류 별	제2류	제3류 자연발화성	제6류	제3류 금수성	주의사항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가연물접촉주의	물기엄금
품명	마그네슘	황린	할로겐화합물	탄화합물																													
류 별	제2류	제3류 자연발화성	제1류	제3류 금수성																													
주의사항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가연물접촉주의	물기엄금																													
품명	마그네슘	황린	할로겐화합물	탄화합물																													
류 별	제2류	제3류 자연발화성	제6류	제3류 금수성																													
주의사항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가연물접촉주의	물기엄금																													
		수정 사유	해설 오류																														
6~6p 기출유사문제 번호 : 06	해설	제39조의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시행시기 ①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해설하기 전 ②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③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다만, 지하·하천 등에 해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해설하기 전) ④ 전체공사가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⑤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⑥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⑦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⑧ 제조소등의 경우 : 제조소 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수정 사유	해설 오류																														
8~8p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개념,공식-설명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수정 사유	본문 오류																														
9~9p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박스내용	개념,공식-설명	·적용법규: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조 제1호)	적용법규: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수정 사유	본문 오류																														
9~9p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제한 (4)번	개념,공식-설명	(4)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지정수량 환산 :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4)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지정수량 환산 :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수정 사유	본문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9~9p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제한 (4)번 박스	개념,공식-설명	<계산 방법> ↓ $\text{계산값} = \frac{\text{A품명의 수량}}{\text{A품명의 지정수량}} + \frac{\text{B품명의 수량}}{\text{B품명의 지정수량}} + \frac{\text{C품명의 수량}}{\text{C품명의 지정수량}} + \dots$ 계산값 ≥ 1 이상 위험물(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 ↓ 계산값 < 1 미만 소량위험물(시·도 조례 규제) ↓	<계산 방법> ↓ $\text{계산값} = \frac{\text{A품명의 수량}}{\text{A품명의 지정수량}} + \frac{\text{B품명의 수량}}{\text{B품명의 지정수량}} + \frac{\text{C품명의 수량}}{\text{C품명의 지정수량}} + \dots$ 계산값 ≥ 1 이상 위험물(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규제) ↓ 계산값 < 1 미만 소량위험물(시·도 조례로 규제) ↓
		수정 사유	본문 오류
9~9p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2)번	개념,공식-설명	(2) 허가받지 않고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와 신고하지 않고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와 신고하지 않고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수정 사유	본문 오류
11~11p 탱크안전성능검사 기준 (4)번	개념,공식-설명	(4) 충수수압시험 제외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③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4) 충수수압검사 제외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③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수정 사유	본문 오류
12~12p 완공검사 (1) 완공검사권자	개념,공식-설명	(1) 완공검사권자: 시·도지사(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 일부 한국산업기술원 위탁)	(1) 완공검사권자: 시·도지사(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 일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
		수정 사유	본문 오류
12~12p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 4번	개념,공식-설명	④ 전체공사가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④ 전체공사가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수정 사유	본문 오류
12~12p 12번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용도폐지신고, 취소 사용정지 등	개념,공식-설명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용도폐지신고, 취소사용정지등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용도폐지신고
		수정 사유	본문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2~12p 11-(4)번	개념, 공식-설명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완공검사를 신청해야 할 제조소의 경우 ①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따른 완공검사 ②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따른 완공검사 ③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따른 완공검사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완공검사를 신청해야 할 제조소의 경우 ①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②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③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수정 사유	본문 오류
12~12p 기출유사문제 번호 : 08	문제-본문	08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역방식의 경우 배출능력은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배풍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③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④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08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역방식의 경우 배출능력은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배풍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④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수정 사유	문제 오류
13~13p 14 과징금 처분	개념, 공식-설명	14 과징금 처분 (1) 과징금의 부과요건 및 금액 ① 부과징수: 사도지사(위임: 소방서장) ② 부과요건: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③ 부과금액: 2억원 이하 (2) 과징금 징수 절차: 행정안전부령(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3) 체납과징금 징수 절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14 과징금 처분 (1) 과징금의 부과요건 및 금액 ① 부과징수: 사도지사(위임: 소방서장) ② 부과요건: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③ 부과금액: 2억원 이하 (2) 과징금 징수 절차: 행정안전부령(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3) 체납과징금 징수 절차: 지방행정재정재 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수정 사유	본문 오류
14~14p (5) 안전관리자 직무 미시행시, 미선임시 업무	개념, 공식-설명	(5) 안전관리자 직무 미시행시, 미선임시 업무: 위험물취급자격취득자 또는 대리자	5) 안전관리자 직무 미시행시, 미선임시 업무: 위험물취급자격취득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
		수정 사유	본문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4~14p (4)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	문제-본문	(4)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 <table><tr><th colspan="5">소방관계법 과징금처분[처분권자:소방서장(사도지사권한위임)]</th></tr><tr><th>처분대상</th><th>요건</th><th>최고처분금액</th><th>금액산정금액 기준</th><th>감경</th></tr><tr><td>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자</td><td>영업(사용)정지가 그이용자에게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td><td>2억원 이하</td><td>전년도의 1년간 매출금액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배수) ※ 자기발전, 자기난방, 유사목적: 1/2 금액</td><td>없음</td></tr><tr><td>소방시설업자</td><td></td><td>3천만원 이하</td><td>도급(계약)금액</td><td>1/2</td></tr><tr><td>소방시설관리업자</td><td></td><td>3천만원 이하</td><td>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td><td>1/2</td></tr><tr><td>방염업 등록업자</td><td></td><td>3천만원 이하</td><td>전년도 연간 매출금액</td><td>1/2</td></tr></table> 수정 사유	소방관계법 과징금처분[처분권자:소방서장(사도지사권한위임)]					처분대상	요건	최고처분금액	금액산정금액 기준	감경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자	영업(사용)정지가 그이용자에게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	전년도의 1년간 매출금액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배수) ※ 자기발전, 자기난방, 유사목적: 1/2 금액	없음	소방시설업자		3천만원 이하	도급(계약)금액	1/2	소방시설관리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	1/2	방염업 등록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 연간 매출금액	1/2	(4)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 <table><tr><th colspan="5">소방관계법 과징금처분[처분권자:소방서장(사도지사권한위임)]</th></tr><tr><th>처분대상</th><th>요건</th><th>최고처분금액</th><th>금액산정금액기준</th><th>감경</th></tr><tr><td>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자</td><td>영업(사용)정지가 그이용자에게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td><td>2억원 이하</td><td>전년도의 1일 평균 매출금액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배수) ※ 자기발전, 자기난방, 유사목적: 1/2 금액</td><td>없음</td></tr><tr><td>소방시설업자</td><td></td><td>3천만원 이하</td><td>도급(계약)금액</td><td>1/2</td></tr><tr><td>소방시설관리업자</td><td></td><td>3천만원 이하</td><td>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td><td>1/2</td></tr><tr><td>방염업 등록업자</td><td></td><td>3천만원 이하</td><td>전년도 연간 매출금액</td><td>1/2</td></tr></table> 본문 오류	소방관계법 과징금처분[처분권자:소방서장(사도지사권한위임)]					처분대상	요건	최고처분금액	금액산정금액기준	감경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자	영업(사용)정지가 그이용자에게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	전년도의 1일 평균 매출금액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배수) ※ 자기발전, 자기난방, 유사목적: 1/2 금액	없음	소방시설업자		3천만원 이하	도급(계약)금액	1/2	소방시설관리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	1/2	방염업 등록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 연간 매출금액	1/2
소방관계법 과징금처분[처분권자:소방서장(사도지사권한위임)]																																																															
처분대상	요건	최고처분금액	금액산정금액 기준	감경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자	영업(사용)정지가 그이용자에게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	전년도의 1년간 매출금액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배수) ※ 자기발전, 자기난방, 유사목적: 1/2 금액	없음																																																											
소방시설업자		3천만원 이하	도급(계약)금액	1/2																																																											
소방시설관리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	1/2																																																											
방염업 등록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 연간 매출금액	1/2																																																											
소방관계법 과징금처분[처분권자:소방서장(사도지사권한위임)]																																																															
처분대상	요건	최고처분금액	금액산정금액기준	감경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자	영업(사용)정지가 그이용자에게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	전년도의 1일 평균 매출금액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배수) ※ 자기발전, 자기난방, 유사목적: 1/2 금액	없음																																																											
소방시설업자		3천만원 이하	도급(계약)금액	1/2																																																											
소방시설관리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	1/2																																																											
방염업 등록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 연간 매출금액	1/2																																																											
15~15p (9) 제조소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문제-본문	<table><tr><th colspan="2">제조소등의종류및규모</th><th>안전관리자의자격</th></tr><tr><td rowspan="2">제조소</td><td>1.제4류위험물만을취급하는것으로서 지정수량5배이하의것</td><td>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td></tr><tr><td>2.제1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td><td>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td></tr></table> 수정 사유	제조소등의종류및규모		안전관리자의자격	제조소	1.제4류위험물만을취급하는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이하 의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제1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table><tr><th colspan="2">제조소등의종류및규모</th><th>안전관리자의자격</th></tr><tr><td rowspan="2">제조소</td><td>1.제4류위험물만을취급하는것으로서 지정수량5배이하의것</td><td>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td></tr><tr><td>2.제1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td><td>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이상의 실무경력이있는 위험물기능사</td></tr></table> 본문 오류	제조소등의종류및규모		안전관리자의자격	제조소	1.제4류위험물만을취급하는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이하 의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제1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이상의 실무경력이있는 위험물기능사																																												
제조소등의종류및규모		안전관리자의자격																																																													
제조소	1.제4류위험물만을취급하는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이하 의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제1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제조소등의종류및규모		안전관리자의자격																																																													
제조소	1.제4류위험물만을취급하는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이하 의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제1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이상의 실무경력이있는 위험물기능사																																																													
16~16p (9)번 표	개념, 공식-설명	<table><tr><td rowspan="6">취급소</td><td>생략</td><td rowspan="7">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td></tr><tr><td>생략</td></tr><tr><td>생략</td></tr><tr><td>생략</td></tr><tr><td>생략</td></tr><tr><td>생략</td></tr><tr><td colspan="2">6.이온전해촉진법에의하여설치된자기발전시설용위험물을이송하는 이송취급소</td></tr></table> 수정 사유	취급소	생략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6.이온전해촉진법에의하여설치된자기발전시설용위험물을이송하는 이송취급소		<table><tr><td rowspan="6">취급소</td><td>생략</td><td rowspan="7">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td></tr><tr><td>생략</td></tr><tr><td>생략</td></tr><tr><td>생략</td></tr><tr><td>생략</td></tr><tr><td>생략</td></tr><tr><td colspan="2">6.「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기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td></tr></table> 본문 오류	취급소	생략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에 따라 설치된 자기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취급소	생략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6.이온전해촉진법에의하여설치된자기발전시설용위험물을이송하는 이송취급소																																																															
취급소	생략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에 따라 설치된 자기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18~18p (15)번	개념, 공식-설명	(15)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의 경우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 등 별로 지정하여 수정 사유	(15)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한 경우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 등 별로 지정하여 본문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0~20p 기출유사문제 번호 : 02	문제-본문	02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제장조명 환기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명설비에 설치하는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한다. ☐ ② 환기설비는 강제배기방식으로 설치하며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장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우리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제장면적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 ④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제장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02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제장조명 환기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명설비에 설치하는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한다. ☐ ② 환기설비는 강제배기방식으로 설치하며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장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우리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제장면적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 ④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제장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정 사유	본문 오류																																																																												
21~21p (3) 정기점검 구분과 점검횟수 박스내용	개념, 공식-설명	<table><tr><th>점검구분</th><th>점검대상</th><th>점검지역</th><th>점검·횟수</th><th>횟수</th></tr><tr><td>일반점검</td><td>정기점검대상</td><td>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탱크·관·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 위험물운송차(이동탱크저장소)</td><td>생략</td><td>생략</td></tr><tr><td>구조안전 점검</td><td>일반점검대상중 50만리터 이상의액체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옥외탱크저장소</td><td>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 ※구조안전점검을위험물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횟수에 대한 지식, 기능 및 인력과장비를 갖추어야 한다.</td><td></td><td></td></tr></table>	점검구분	점검대상	점검지역	점검·횟수	횟수	일반점검	정기점검대상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탱크·관·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 위험물운송차(이동탱크저장소)	생략	생략	구조안전 점검	일반점검대상중 50만리터 이상의액체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옥외탱크저장소	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 ※구조안전점검을위험물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횟수에 대한 지식, 기능 및 인력과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table><tr><th>점검구분</th><th>점검대상</th><th>점검지역</th><th>점검·횟수</th><th>횟수</th></tr><tr><td>일반점검</td><td>정기점검대상</td><td>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탱크·관·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 위험물운송차(이동탱크저장소)</td><td>생략</td><td>생략</td></tr><tr><td>구조안전 점검</td><td>일반점검대상중 50만리터 이상의액체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옥외탱크저장소</td><td>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 ※구조안전점검을위험물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 방법에 대한 지식, 기능 및인력과장비를 갖추어야 한다.</td><td></td><td></td></tr></table>	점검구분	점검대상	점검지역	점검·횟수	횟수	일반점검	정기점검대상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탱크·관·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 위험물운송차(이동탱크저장소)	생략	생략	구조안전 점검	일반점검대상중 50만리터 이상의액체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옥외탱크저장소	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 ※구조안전점검을위험물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 방법에 대한 지식, 기능 및인력과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점검구분	점검대상	점검지역	점검·횟수	횟수																																																																											
일반점검	정기점검대상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탱크·관·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 위험물운송차(이동탱크저장소)	생략	생략																																																																											
구조안전 점검	일반점검대상중 50만리터 이상의액체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옥외탱크저장소	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 ※구조안전점검을위험물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횟수에 대한 지식, 기능 및 인력과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점검구분	점검대상	점검지역	점검·횟수	횟수																																																																											
일반점검	정기점검대상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탱크·관·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 위험물운송차(이동탱크저장소)	생략	생략																																																																											
구조안전 점검	일반점검대상중 50만리터 이상의액체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옥외탱크저장소	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 ※구조안전점검을위험물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 방법에 대한 지식, 기능 및인력과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수정 사유	본문 오류																																																																												
25~25p 출입검사 (1)번	개념, 공식-설명	출입검사 (1)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제22조의2에서 같다)	출입검사 (1)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22조의2에서 같다)																																																																												
		수정 사유	본문 오류																																																																												
25~25p 출입검사 (3)번	개념, 공식-설명	(3)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 요구권자 :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3)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 요구권자 : 소방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																																																																												
		수정 사유	본문 오류																																																																												
33~33p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간 정리 표	개념, 공식-설명	<table><tr><th></th><th>정기점검 횟수</th><th>연회 이상</th><th>관계인이 자제 또는 제재</th></tr><tr><td>정기점검</td><td>정기점검의 실시 점검결과 통보</td><td>10일 이내</td><td>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td></tr><tr><td>정기점검의 기록보존</td><td></td><td>3년간</td><td></td></tr><tr><td>구조안전 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td><td>정기점검 시기</td><td>기간 내에 1회</td><td>완공검사 발급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3년 이내, (공사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td></tr><tr><td>정기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td><td>구조안전점검 기록 보존 공사에제 연장한 경우</td><td>25년 30년</td><td>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발급 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이내, (공사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td></tr><tr><td>정기검사 (50년) 이상 옥외탱크</td><td>정기검사 시기 정기검사발급 교부 및 통보</td><td>10일 이내</td><td>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td></tr></table>		정기점검 횟수	연회 이상	관계인이 자제 또는 제재	정기점검	정기점검의 실시 점검결과 통보	10일 이내	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	정기점검의 기록보존		3년간		구조안전 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	정기점검 시기	기간 내에 1회	완공검사 발급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3년 이내, (공사 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	정기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	구조안전점검 기록 보존 공사 에제 연장한 경우	25년 30년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발급 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이내, (공사 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	정기검사 (50년) 이상 옥외탱크	정기검사 시기 정기검사발급 교부 및 통보	10일 이내	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	<table><tr><th></th><th>정기점검 횟수</th><th>연회 이상</th><th>관계인이 자제 또는 제재</th></tr><tr><td>정기점검</td><td>정기점검의 실시 점검결과 통보</td><td>10일 이내</td><td>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td></tr><tr><td>정기점검의 기록보존</td><td></td><td>3년간</td><td></td></tr><tr><td>구조안전 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td><td>정기점검 시기</td><td>기간 내에 1회</td><td>완공검사 발급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3년 이내, (기술원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td></tr><tr><td>정기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td><td>구조안전점검 기록 보존 기술원에제 연장한 경우</td><td>25년 30년</td><td>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발급 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이내, (기술원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td></tr><tr><td>정기검사 (50년) 이상 옥외탱크</td><td>정기검사 시기 정기검사발급 교부 및 통보</td><td>10 이내</td><td>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td></tr></table>		정기점검 횟수	연회 이상	관계인이 자제 또는 제재	정기점검	정기점검의 실시 점검결과 통보	10일 이내	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	정기점검의 기록보존		3년간		구조안전 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	정기점검 시기	기간 내에 1회	완공검사 발급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3년 이내, (기술원 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	정기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	구조안전점검 기록 보존 기술원 에제 연장한 경우	25년 30년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발급 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이내, (기술원 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	정기검사 (50년) 이상 옥외탱크	정기검사 시기 정기검사발급 교부 및 통보	10 이내	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																												
	정기점검 횟수	연회 이상	관계인이 자제 또는 제재																																																																												
정기점검	정기점검의 실시 점검결과 통보	10일 이내	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																																																																												
정기점검의 기록보존		3년간																																																																													
구조안전 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	정기점검 시기	기간 내에 1회	완공검사 발급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3년 이내, (공사 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																																																																												
정기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	구조안전점검 기록 보존 공사 에제 연장한 경우	25년 30년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발급 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이내, (공사 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																																																																												
정기검사 (50년) 이상 옥외탱크	정기검사 시기 정기검사발급 교부 및 통보	10일 이내	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																																																																												
	정기점검 횟수	연회 이상	관계인이 자제 또는 제재																																																																												
정기점검	정기점검의 실시 점검결과 통보	10일 이내	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																																																																												
정기점검의 기록보존		3년간																																																																													
구조안전 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	정기점검 시기	기간 내에 1회	완공검사 발급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3년 이내, (기술원 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																																																																												
정기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	구조안전점검 기록 보존 기술원 에제 연장한 경우	25년 30년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발급 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이내, (기술원 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																																																																												
정기검사 (50년) 이상 옥외탱크	정기검사 시기 정기검사발급 교부 및 통보	10 이내	탱크·합자(안전관리자의인용)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																																																																												
		수정 사유	본문 오류																																																																												
35~35p 보유공지 규제대상	개념, 공식-설명	(2) 보유공지 규제대상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제조소</th><th colspan="5">저장소</th><th colspan="5">취급소</th></tr><tr><th>옥 내</th><th>옥 외</th><th>옥 내</th><th>지하</th><th>이동</th><th>간이</th><th>일반</th><th>옥 외</th><th>주 유</th><th>판 매</th><th>일 반</th><th>이 송</th></tr><tr><td>보유 공지</td><td>○</td><td>○</td><td>○</td><td>×</td><td>×</td><td>×</td><td>○ (옥외)</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구 분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옥 내	옥 외	옥 내	지하	이동	간이	일반	옥 외	주 유	판 매	일 반	이 송	보유 공지	○	○	○	×	×	×	○ (옥외)	×	×	×	×	○	○	(2) 보유공지 규제대상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제조소</th><th colspan="5">저장소</th><th colspan="5">취급소</th></tr><tr><th>옥 내</th><th>옥 외</th><th>옥 내</th><th>지하</th><th>이동</th><th>간이</th><th>일반</th><th>옥 외</th><th>주 유</th><th>판 매</th><th>일 반</th><th>이 송</th></tr><tr><td>보유 공지</td><td>○</td><td>○</td><td>○</td><td>×</td><td>×</td><td>×</td><td>○ (옥외)</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구 분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옥 내	옥 외	옥 내	지하	이동	간이	일반	옥 외	주 유	판 매	일 반	이 송	보유 공지	○	○	○	×	×	×	○ (옥외)	×	○	×	×	○	○
구 분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옥 내	옥 외	옥 내	지하	이동	간이	일반	옥 외	주 유	판 매	일 반	이 송																																																																		
보유 공지	○	○	○	×	×	×	○ (옥외)	×	×	×	×	○	○																																																																		
구 분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옥 내	옥 외	옥 내	지하	이동	간이	일반	옥 외	주 유	판 매	일 반	이 송																																																																		
보유 공지	○	○	○	×	×	×	○ (옥외)	×	○	×	×	○	○																																																																		
		수정 사유	본문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36~36p (1) 표지 및 게시판	개념, 공식·설명	<table><tr><th>구분</th><th>항목</th><th>표지(게시)내용</th><th>크기</th><th>색상</th></tr><tr><td>표지판</td><td>제조소 등</td><td>"위험물 제조소 등" 명칭 표시</td><td></td><td></td></tr><tr><td rowspan="2">게시판</td><td>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td><td>• 유별 및 품명 • 적정(취급)최대수량 • 지정수량대수 •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td><td rowspan="2">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td><td>• 백색바탕/흑색문자</td></tr><tr><td>주의사항</td><td>• 화기열급, 화기주의 • 물기열급</td><td>• 적색바탕/흑색문자 • 청색바탕/백색문자</td></tr></table>	구분	항목	표지(게시)내용	크기	색상	표지판	제조소 등	"위험물 제조소 등" 명칭 표시			게시판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유별 및 품명 • 적정(취급)최대수량 • 지정수량대수 •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 백색바탕/흑색문자	주의사항	• 화기열급, 화기주의 • 물기열급	• 적색바탕/흑색문자 • 청색바탕/백색문자	<table><tr><th>구분</th><th>항목</th><th>표지(게시)내용</th><th>크기</th><th>색상</th></tr><tr><td>표지판</td><td>제조소 등</td><td>"위험물 제조소 등" 명칭 표시</td><td></td><td></td></tr><tr><td rowspan="2">게시판</td><td>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td><td>• 유별 및 품명 • 적정(취급)최대수량 • 지정수량대수 •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td><td rowspan="2">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td><td>• 백색바탕/흑색문자</td></tr><tr><td>주의사항</td><td>• 화기열급, 화기주의 • 물기열급</td><td>• 적색바탕/흑색문자 • 청색바탕/백색문자</td></tr></table>	구분	항목	표지(게시)내용	크기	색상	표지판	제조소 등	"위험물 제조소 등" 명칭 표시			게시판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유별 및 품명 • 적정(취급)최대수량 • 지정수량대수 •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 백색바탕/흑색문자	주의사항	• 화기열급, 화기주의 • 물기열급	• 적색바탕/흑색문자 • 청색바탕/백색문자												
구분	항목	표지(게시)내용	크기	색상																																															
표지판	제조소 등	"위험물 제조소 등" 명칭 표시																																																	
게시판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유별 및 품명 • 적정(취급)최대수량 • 지정수량대수 •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 백색바탕/흑색문자																																															
	주의사항	• 화기열급, 화기주의 • 물기열급		• 적색바탕/흑색문자 • 청색바탕/백색문자																																															
구분	항목	표지(게시)내용	크기	색상																																															
표지판	제조소 등	"위험물 제조소 등" 명칭 표시																																																	
게시판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유별 및 품명 • 적정(취급)최대수량 • 지정수량대수 •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 백색바탕/흑색문자																																															
	주의사항	• 화기열급, 화기주의 • 물기열급		• 적색바탕/흑색문자 • 청색바탕/백색문자																																															
		수정 사유	본문 오류																																																
36~36p (3)제조소의 보유공지설정 기준 암기팁	개념, 공식·설명	암기 TIP <table><tr><th colspan="3">적정, 취급하는 최대수량</th><th colspan="3">공지의 너비</th></tr><tr><td>육내저장소</td><td>육외저장소</td><td>육외탱크 저장소</td><td>벽, 바다 내화구조</td><td>육외 저장소</td><td>육외탱크 저장소</td></tr><tr><td>5배 이하</td><td>10배 이하</td><td>500 이하</td><td></td><td>0.5</td><td>3</td></tr><tr><td colspan="3">500~1,000</td><td></td><td></td><td></td></tr></table>	적정, 취급하는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육내저장소	육외저장소	육외탱크 저장소	벽, 바다 내화구조	육외 저장소	육외탱크 저장소	5배 이하	10배 이하	500 이하		0.5	3	500~1,000						암기 TIP <table><tr><th colspan="3">적정, 취급하는 최대수량</th><th colspan="3">공지의 너비</th></tr><tr><td>육내저장소</td><td>육외저장소</td><td>육외탱크 저장소</td><td>벽, 기둥, 바다 내화구조</td><td>육외 저장소</td><td>육외탱크 저장소</td></tr><tr><td>5배 이하</td><td>10배 이하</td><td>500 이하</td><td></td><td>0.5</td><td>3</td></tr><tr><td colspan="3">500~1,000</td><td></td><td></td><td></td></tr></table>	적정, 취급하는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육내저장소	육외저장소	육외탱크 저장소	벽, 기둥, 바다 내화구조	육외 저장소	육외탱크 저장소	5배 이하	10배 이하	500 이하		0.5	3	500~1,000					
적정, 취급하는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육내저장소	육외저장소	육외탱크 저장소	벽, 바다 내화구조	육외 저장소	육외탱크 저장소																																														
5배 이하	10배 이하	500 이하		0.5	3																																														
500~1,000																																																			
적정, 취급하는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육내저장소	육외저장소	육외탱크 저장소	벽, 기둥, 바다 내화구조	육외 저장소	육외탱크 저장소																																														
5배 이하	10배 이하	500 이하		0.5	3																																														
500~1,000																																																			
		수정 사유	본문 오류																																																
41~41p (7) 피뢰설비	문제-본문	(7)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 설치제외 1)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2)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비파괴	(7)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 설치제외 1)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2)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수정 사유	본문 오류																																																
49~49p	개념, 공식·설명	특정옥외탱크저장소등정의 (1) 특정옥외저장소·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 이상의 옥외저장소 (2) 준특정옥외저장소·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 이상의 100만 미만의 옥외저장소 (1) 옥외저장탱크 ① 일반옥외탱크와 준특정옥외탱크(특정옥외탱크는 제외)의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②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이상이 없을 것 ③ 압력탱크와 옥외탱크: 충수시험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2배 압을 초과하는 탱크 ③ 특정옥외탱크의 용접부의 검사: 방사선투과시험, 진공시험, 비파괴시험 (5)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 ①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나치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제6류 위험물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위험물은 제외)	특정옥외탱크저장소등정의 (1) 특정옥외저장소·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2) 준특정옥외저장소·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옥외저장탱크 (1) 옥외저장탱크 ① 특정·준특정 옥외저장탱크 외의 탱크: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할 것 ②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이상이 없을 것 ③ 압력탱크와 옥외탱크: 충수시험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2배 압을 초과하는 탱크 ③ 특정옥외탱크의 용접부의 검사: 방사선투과시험, 진공시험 등의 비파괴시험 (5)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 ①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나치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위험물은 제외)																																																
		수정 사유	본문 오류																																																
53~53p	개념, 공식·설명	(4) 옥내저장탱크 ①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를 초과하는 탱크) 외의 탱크: 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	(4) 옥내저장탱크 ①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를 초과하는 탱크) 외의 탱크: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설치																																																
		수정 사유	본문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54~54p 기출유사문제 번호 : 09	문제-본문	⑨ 위험물 제조소의 배출설비의 설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전역방식으로 하는 경우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풍기는 강제배기 방식으로 하고,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하가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수정 사유	문제 오류																																													
56~56p	개념,공식-설명	(8) 탱크전용실은 벽및바닥: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구조	(8) 탱크전용실은 벽및바닥: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구조																																													
		수정 사유	본문 오류																																													
60~60p	개념,공식-설명	(4)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	(4)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																																													
		수정 사유	본문 오류																																													
62~62p	개념,공식-설명	(2)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이동저장탱크 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 금속구 및 모서리체결 금속구를 설치할 것	(2)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 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 금속구 및 모서리체결 금속구를 설치할 것																																													
		수정 사유	본문 오류																																													
69~69p	개념,공식-설명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 장의 유리를 두께 0.7mm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F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 장의 유리를 두께 0.76mm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F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수정 사유	본문 오류																																													
72~72p	개념,공식-설명	<table><tr><td>건축물 구조</td><td>재료</td><td>내화구조</td><td>또는 내화구조</td><td>재료</td><td>내화구조</td><td>지정할 내화구조</td></tr><tr><td>장 및 출입구: 갑판방화문 또는 출입방화문 설치</td><td></td><td>장: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장을 두지 갑판방화문 또는 출입방화문 설치</td><td></td><td>출입구: 갑판방화문 또는 출입방화문 설치(연소가 우려 되는 벽 또는 창에 출입구: 1층에의 갑판방화문)</td><td></td><td></td></tr><tr><td>출입구에 유리 설치시: 방입유리</td><td></td><td></td><td></td><td>준 용</td><td></td><td></td></tr><tr><td>전기설비</td><td>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td><td>적</td><td></td><td>준 용</td><td></td><td></td></tr><tr><td>배화설 기준</td><td>•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일 것.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 바닥 불침투수 재료하고 적당한 경사, 집유설비 설치. • 출입구: 화재시의 갑판방화문. • 출입구 문턱높이: 0.1 이상. • 가연성물이 또는 미분: 지붕으로 방출하는 설비 설치.</td><td></td><td></td><td>준 용</td><td></td><td></td></tr></table>	건축물 구조	재료	내화구조	또는 내화구조	재료	내화구조	지정할 내화구조	장 및 출입구: 갑판방화문 또는 출입방화문 설치		장: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장을 두지 갑판방화문 또는 출입방화문 설치		출입구: 갑판방화문 또는 출입방화문 설치(연소가 우려 되는 벽 또는 창에 출입구: 1층에의 갑판방화문)			출입구에 유리 설치시: 방입유리				준 용			전기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	적		준 용			배화설 기준	•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일 것.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 바닥 불침투수 재료하고 적당한 경사, 집유설비 설치. • 출입구: 화재시의 갑판방화문. • 출입구 문턱높이: 0.1 이상. • 가연성물이 또는 미분: 지붕으로 방출하는 설비 설치.			준 용			<table><tr><td>장 및 출입구: 갑판방화문 또는 출입방화문 설치</td><td>장: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장을 두지 갑판방화문 또는 출입방화문 설치</td></tr><tr><td>출입구에 유리 설치시: 방입유리</td><td>준 용</td></tr><tr><td>전기설비</td><td>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td><td>준 용</td></tr><tr><td>배화설 기준</td><td>•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일 것.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 바닥 불침투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 집유설비 설치. • 출입구: 자동폐쇄시의 갑판방화문. • 출입구 문턱높이: 0.1m 이상. • 가연성물이 또는 미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 설치.</td><td>준 용</td></tr></table>	장 및 출입구: 갑판방화문 또는 출입방화문 설치	장: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장을 두지 갑판방화문 또는 출입방화문 설치	출입구에 유리 설치시: 방입유리	준 용	전기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	준 용	배화설 기준	•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일 것.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 바닥 불침투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 집유설비 설치. • 출입구: 자동폐쇄시의 갑판방화문. • 출입구 문턱높이: 0.1m 이상. • 가연성물이 또는 미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 설치.	준 용
		건축물 구조	재료	내화구조	또는 내화구조	재료	내화구조	지정할 내화구조																																								
장 및 출입구: 갑판방화문 또는 출입방화문 설치		장: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장을 두지 갑판방화문 또는 출입방화문 설치		출입구: 갑판방화문 또는 출입방화문 설치(연소가 우려 되는 벽 또는 창에 출입구: 1층에의 갑판방화문)																																												
출입구에 유리 설치시: 방입유리				준 용																																												
전기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	적		준 용																																												
배화설 기준	•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일 것.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 바닥 불침투수 재료하고 적당한 경사, 집유설비 설치. • 출입구: 화재시의 갑판방화문. • 출입구 문턱높이: 0.1 이상. • 가연성물이 또는 미분: 지붕으로 방출하는 설비 설치.			준 용																																												
장 및 출입구: 갑판방화문 또는 출입방화문 설치	장: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장을 두지 갑판방화문 또는 출입방화문 설치																																															
출입구에 유리 설치시: 방입유리	준 용																																															
전기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	준 용																																														
배화설 기준	•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일 것.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 바닥 불침투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 집유설비 설치. • 출입구: 자동폐쇄시의 갑판방화문. • 출입구 문턱높이: 0.1m 이상. • 가연성물이 또는 미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 설치.	준 용																																														
수정 사유	본문 오류																																															
77~77p	개념,공식-설명	<table><tr><td rowspan="4">옥외, 탱크, 저장소</td><td>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td><td>유체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td><td>물분무소화설비</td></tr><tr><td rowspan="3">그 밖의 것</td><td>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td><td>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td></tr><tr><td>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용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 소화설비)</td><td></td></tr><tr><td>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td><td></td></tr><tr><td rowspan="2">지중소</td><td>지중탱크</td><td>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td><td></td></tr><tr><td>해상탱크</td><td>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td><td></td></tr></table>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유체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그 밖의 것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용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 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지중소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table><tr><td rowspan="4">옥외, 탱크, 저장소</td><td>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td><td>유체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td><td>물분무소화설비</td></tr><tr><td rowspan="3">그 밖의 것</td><td>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td><td>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td></tr><tr><td>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용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 소화설비)</td><td></td></tr><tr><td>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td><td></td></tr><tr><td rowspan="2">지중소</td><td>지중탱크</td><td>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td><td></td></tr><tr><td>해상탱크</td><td>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td><td></td></tr></table>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유체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그 밖의 것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용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 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지중소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유체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그 밖의 것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용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 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지중소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유체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그 밖의 것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용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 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지중소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수정 사유	본문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96~96p 최종모의고사 번호 : 18	문제-본문	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에 대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따라 연간 매출액 기준 또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 과징금 금액은 해당 제소소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취급소 <table><tr><td>생략</td><td>위험물기능장</td></tr><tr><td>생략</td><td>위험물산업기사</td></tr><tr><td></td><td>위험물기능사</td></tr><tr><td></td><td>안전관리자</td></tr><tr><td></td><td>교육이수자</td></tr><tr><td></td><td>소방공무원</td></tr><tr><td></td><td>경력자</td></tr></table> 6.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기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이송취급소	생략	위험물기능장	생략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에 대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따라 연간 매출액 기준 또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 과징금 금액은 해당 제소소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징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취급소 <table><tr><td>생략</td><td>위험물기능장</td></tr><tr><td>생략</td><td>위험물산업기사</td></tr><tr><td></td><td>위험물기능사</td></tr><tr><td></td><td>안전관리자</td></tr><tr><td></td><td>교육이수자</td></tr><tr><td></td><td>소방공무원</td></tr><tr><td></td><td>경력자</td></tr></table>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기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생략	위험물기능장	생략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생략	위험물기능장																												
생략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생략	위험물기능장																														
생략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수정 사유	문제 오류																												
183~183p 정답 및 해설	정답	15 ④	15 ③																												
		수정 사유	정답 오류																												
195~195p 정답 및 해설 번호 : 22	해설	취급소 <table><tr><td>생략</td><td>위험물기능장</td></tr><tr><td>생략</td><td>위험물산업기사</td></tr><tr><td></td><td>위험물기능사</td></tr><tr><td></td><td>안전관리자</td></tr><tr><td></td><td>교육이수자</td></tr><tr><td></td><td>소방공무원</td></tr><tr><td></td><td>경력자</td></tr></table> 6.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기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이송취급소	생략	위험물기능장	생략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취급소 <table><tr><td>생략</td><td>위험물기능장</td></tr><tr><td>생략</td><td>위험물산업기사</td></tr><tr><td></td><td>위험물기능사</td></tr><tr><td></td><td>안전관리자</td></tr><tr><td></td><td>교육이수자</td></tr><tr><td></td><td>소방공무원</td></tr><tr><td></td><td>경력자</td></tr></table>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기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생략	위험물기능장	생략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생략	위험물기능장																														
생략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생략	위험물기능장																														
생략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수정 사유	해설 오류																												
200~200p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 및 내용 표 내용 번호 : 12	해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수정 사유	해설 오류																												
221~221p 번호 : 08	해설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																												
		수정 사유	해설 오류																												
235~235p 22번 문제 3번 해설 번호 : 22	문제-본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징제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수정 사유	해설 오류																												
250~250p 22번 문제 3번 해설 번호 : 22	해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징제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수정 사유	해설 오류																												
265~265p 15회 정답 및 해설 정답표	문제-본문	11 ③	11 ①																												
		수정 사유	정답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73~273p 공지의 너비 중 옥내저장소 파트 번호 : 17	해설	벽, 바닥이 내화구조	벽, 기둥, 바닥이 내화구조
		수정 사유	해설 오류
301~301p 공지의 너비 중 옥내저장소 파트 번호 : 19	해설	벽, 바닥이 내화구조	벽, 기둥, 바닥이 내화구조
		수정 사유	해설 오류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